

2023
신혼가정부 정기총회

2023. 10. 29

2023 신혼가정부 정기총회

2023. 10. 29(주일)

사회 : 최은빈 회장

- 순 서 -

기도 ----- 황지현 부회장

회원점명 ----- 김재훈 서기

사역보고 ----- 전재원 총무

회계보고 ----- 심재민 회계

면려회장 임명 ----- 이재관 선관위원장

회칙개정 ----- 최은빈 회장

주기도문 ----- 다같이

2023년 신혼가정부 사역 보고

연도	월	일	행사명
2022년	12월	11일	2023 면려회 임원 임명식
		18일	수료&진급식
		25일	성탄절 행사
2023년	1월	9일-13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및 간식행사
		14일	신혼가정부 리더 워크숍
		22일	신혼가정부 설날 행사
		28일	면려회 임원 워크숍
	2월	19일	우리가정 달력자랑 이벤트
	3월	5일	온순온맘 기도회
		18일	찬양팀세미나
	4월	9일	순별 부활절 축하 행사
		16일	지역별 모임
	5월	4일	순장면려회 연합기도회
		21일	온순온맘 기도회 뿌티풀데이(하늘정원) 및 스승의 날 행사
	6월	4일	부서 성경암송 연습 시작 (시편 46편)
		8일-15일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이재관 이지형 순장)
		11일	순장면려회 연합기도회 영성훈련(신가부나들이)장소사전답사 순장&면려회단합모임
		18일	신가부 카페 운영 시작
		23일	부서 성경 암송 (시편 46편-금요찬양집회 시)
		25일	신가부 백일장(시화전) 야외한강나들이(신가부한강나들이)
	7월	2일	신가부 백일장(시화전) 시상식
		16일	순장 면려회 연합기도회
		29일	면려회 워크숍
	8월	20일	금요헌신집회 찬양연습 시작
		25일-30일	일본 단기선교 파송 (2명)
		30일-9월1일	전교인 부흥회 및 간식행사
	9월	10일	신가부 카페 운영 종료
		24일	순장 면려회 연합기도회 수련회릴레이기도시작
	10월	8일	순장&면려회-수련회 기도회 및 준비회의 수련회준비(찬양연습/물품준비)
		13일-14일	금요헌신집회 신혼가정부가을수련회(기도원)
		15일	식당봉사
		29일	신혼가정부 정기총회

회계 보고

신혼가정부 회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및 해설

2023. 10. 8 개정 발의
2023. 10. 29 정기총회시 개정

2023 신혼가정부 회칙개정 위원회

항목	기존 문구	수정 문구	개정 이유
제 1조	(명칭) 본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 면려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명칭) 본회는 충현교회 <u>차세대위원회</u> 신혼가정부 면려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소속 위원회 명칭 개정 에 따른 수정
제 2조	(소속) 본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 내에 두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 청, 장년 면려회 동서울노회 서울연합회의 지회가 된다.	(소속) 본회는 충현교회 <u>차세대위원회</u> 신혼가정부 내에 두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 청, 장년 면려회 동서울노회 서울연합회의 지회가 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에 속한 회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신혼가정부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충현교회의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목적) 본 회는 충현교회 <u>차세대위원회</u> 신혼가정부에 속한 회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신혼가정부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충현교회의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 1	1. 본 회 회원은 충현교회 교회학교 신혼가정부에 등록한 자로서 제2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학제 개편에 준하는 동안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본 회 회원은 충현교회 <u>차세대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부서편제)에서 정한 자격에</u> <u>해당하여 신혼가정부에 등록하고</u> <u>제적되지 않은 자로 한다.</u>	- 소속 위원회 명칭 개정 에 따른 수정 - 제적된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확한 자격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
제 4조 5	5. 준회원은 순장과 그 배우자로 한다.	준회원은 순장과 그 배우자 <u>으로</u> 한다.	- 순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배우자는 회원자격 없으므로 삭제

항목	기존 문구	수정 문구	개정 이유
제 5조	제5조(자격상실) 본 회 회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2주 이상 장기 결석한 자, 타 교회 등록한 자는 부장의 승인을 얻어 매 분기 말에 제적할 수 있다	(자격상실) 본 회 회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2주 이상 장기 결석한 자, 타 교회 등록한 자는 <u>교사회의</u> 승인을 얻어 매 분기 말에 제적할 수 있다.	- 제적 승인을 부장 단독 결정이 아닌 교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
제 9조 1	제9조 (임원의 자격) 1.임원의 자격은 본 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하며 본 교회 제2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였던 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도 가능하다.	임원의 자격은 본 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하며 본 교회 <u>차세대위원회</u> 에 등록하여 출석하였던 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도 가능하다.	- 소속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제 10조 1	제10조 (임원 임명) 1. 정,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 추천과 부회장 동의,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부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 임명) <u>±</u> 정,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 추천과 부회장 동의,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부장이 임명한다.	- 항목 번호 불필요하여 삭제
제 11조 1	1.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1.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1년(<u>매년 1~12월</u>)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추가
제 13조 1	1. 정기총회 : 매년 제2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날 (단, 회기 변경 전 1개월 이내로 진행한다.)에 소집하되 ...	1. 정기총회 : 매년 <u>차세대위원회</u> 에서 정한 날(단, 회기 변경 전 2개월 전후로 진행한다.)에 소집하되 ...	- 소속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 면려회 구성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총회 기간에 유연성 부여를 위해 수정
제 13조 4	4. 확대임원회의 : 확대 임원은 임원, 각 순장 및 배우자, 교사회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사업결정 및 주요사항을 처리한다.	4. 확대임원회의 : 확대 임원은 임원, <u>순장</u> , 교사회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사업결정 및 주요사항을 처리한다.	- 순장이 아닌 배우자를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삭제

항목	기존 문구	수정 문구	개정 이유
제 13조 6	6. 월 레 회 :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전월 결산 및 월중행사를 의결한다. 소집대상은 면려회, 교사회, 순장 및 배우자이며 필요 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6. 월레회: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전월 결산 및 월중행사를 의결한다. 소집대상은 면려회, 교사회, <u>순장</u> 이며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순장이 아닌 배우자를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삭제
제 19조 2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차 투표 시 미결일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선거권을 가진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차 투표 시 미결일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선거권을 갖는 정회원만의 과반수를 계수할 수 없으므로, 득표기준의 범위를 선거권을 가지고 출석한 회원 전체로 수정
제 19조 3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출석 정회원 2/3의 득표를 요하며, 부결시는 2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u>선거권을 가진 출석 회원 2/3의 득표를</u> 요하며, 부결시는 2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제 2조	제2조 (적용규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현교회 당회의 규정안 및 교육위원회의 통상 규례에 의한다.	(적용규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현교회 당회의 규정안 및 교육위원회 <u>차세대위원회의 통상 규례에 의한다.</u>	- 소속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끝-

2023년 10월 8일

회칙개정위원장 최은빈(회장)

개정위원 김재훈(서기), 이상완(순장), 이재관(순장), 이지연(순장)

신혼가정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 면려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 내에 두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 청, 장년 면려회 동서울노회 서울연합회의 지회가 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충현교회 제2교육위원회 신혼가정부에 속한 회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신혼가정부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충현교회의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및 교사회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 회원은 충현교회 교회학교 신혼가정부에 등록한 자로서 제2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학제 개편에 준하는 동안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신입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신입회원은 신혼가정부에 4주 미만 출석한 자로 한다.
4. 정회원은 신혼가정부에 4주 이상 출석하고 각순에 등순한 자로 한다.
5. 준회원은 순장과 그 배우자로 한다.
6. 준회원은 교사회에 의해서 임명되며 회원들의 양육에 관한 일체 사역을 담당한다.

제5조(자격상실) 본 회 회원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2주 이상 장기 결석한 자, 타 교회 등록한 자는 부장의 승인을 얻어 매 분기 말에 제적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 정회원은 신혼가정부 집회 및 모든 공식 모임에 참석하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면려회비 납부 등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준회원은 회원의 자격으로 의결권, 선거권은 가지나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7조(교사회)

1. 본 회의 교사회는 지도, 부장, 남녀부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교육, 행정, 지도를 주된 임무로 한다.
2. 교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본 회의 주요 의제 및 안건이 있을 때에는 지도의 목적으로 발언권은 갖는다.

제3장 조직과 임무

제8조(조직과 임무) 본 회의 조직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임원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홍보, 친교)과 찬양팀으로 구성되며 회장단과 부서장 각각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1) 회장-본 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본 회와 교사회간의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총무-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조정, 통괄한다.
- 4) 서기-회의 기록 및 문서수발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5) 회계-본 회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 6) 홍보-본 회 모든 행사 및 대내외 홍보와 관계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 7) 친교-본 회 모든 행사 중 친교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8) 찬양팀-본 회 모든 행사 중 찬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2.임원회는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에 따라 임시 부서 또는 신설 부서를 증설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3.소그룹장은 각 소그룹을 대표하여 소그룹 모임의 운영과 사역을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자격)

1.임원의 자격은 본 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하며 본 교회 제2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였던 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도 가능하다.

2.정, 부회장의 자격은 본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인자이며 선관위 및 교사회에 의해 정한다.

제10조 (임원 임명)

1. 정,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 추천과 부회장 동의,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부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총회 후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회, 소그룹)

- 1.본회는 산하에 임원회, 소그룹을 둔다.
- 2.임원회는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 운영의 실무를 신혼가정부 공식모임의 운영 및 행정업무를 한다.
- 3.소그룹은 각각의 특수한 사역과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며 부장의 승인을 거쳐 신혼가정부 본 회 내에 등록된다.

제4장 회의 및 재정

제13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1. 정 기 총 회 : 매년 제2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날(단, 회기 변경 전 1개월 이내로 진행한다.)에 소집하되 총회 7주일 전에 공고하고 당일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사업보고, 결산보고, 회칙개정, 정·부회장 선거 등 총회의결사항을 처리한다.

2. 임 시 총 회 : 출석회원 과반수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총회 2주일 전에 공고 후 개최하며 회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3. 정기임원회의 : 전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1회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회의 안건 및 주요 사항을 검토한다.
4. 확대임원회의 : 확대 임원은 임원, 각 순장 및 배우자, 교사회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사업결정 및 주요사항을 처리한다.
5. 임시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현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6. 월례회 :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전월 결산 및 월중행사를 의결한다. 소집대상은 면려회, 교사회, 순장 및 배우자이며 필요 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예산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선교사업을 위해 별도 헌금을 할 수 있다.

제15조 (회비)

회비의 수납 방법은 임원회의 결의로 교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및 선거

제16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단이나 출석회원의 10분의 1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총회 2주전에 공고한다.

제17조 (정기총회 회칙개정위원회)

회장의 위촉과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 4주전에 회장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며, 회칙개정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은 총회 8주전 직전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단, 전년도 회장이 유고 시에는 교사회 승인을 거친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 7주전 본회 회원 5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정, 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하며 입후보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회원을 권면하여 입후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2개월 평균 정회원 출석인원이 정회원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임명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선거)

1. 정,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4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차 투표 시 미결일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출석 정회원 2/3의 득표를 요하며, 부결시는 2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다만 선거 4주전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사회의 승인을 거쳐 권면하여 임명한다

제20조 (임명)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 제18조 4항에 따라 임명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회 4주전에 회원들로부터 회장후보 추천을 받는다.
2. 회장후보 추천은 2주 동안 회원별 1회만 하는 것으로 하며, 남녀 각1명을 추천한다.
3. 추천후보는 최다추천후보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회장권면을 하며 수락 시 총회에서 교사회의 임명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4. 부회장은 회장후보 수락이 끝난 후에 차순위자 권면, 수락으로 총회 때 교사회의 임명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보선의 실시)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이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 임시총회를 거쳐 보선을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효력)

본회의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적용규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현교회 당회의 규정안 및 교육위원회의 통상 규례에 의한다.

2019년 11월10일
회칙제정위원장 손세훈

회칙제정 위원회(총 7명)

손세훈(위원장), 김유림(면려회 부회장), 김영민(면려회 총무)

최창하(부장), 정재석(부감), 이지형(교무처장), 이재관(순장)